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5286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민금융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이상호, 황승호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601,403원 및 그 중 9,431,705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232,850원에 대해서는 2020. 12. 1.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936,848원에 대해서는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89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정도영

별지